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전 조례의 “어린이” 용어를 「유엔아동권리협약」 과 「아동복지법」 에 따라 “아동”으로 정비하고, 아동의 대상을 「아동복지법」 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개정하여 법령의 통일성 및 체계성을 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2호)
- 다. 기타 조례 전문에 걸쳐 “어린이” 및 “어린이 친화도시”를 “아동” 및 “아동 친화도시”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2015. 3. 19. ~ 4. 8.(20일)
- 2)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별첨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개선권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여부	반영 결과
(안)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u>15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구성할 위원회 수의 기준범위가 모호함	반영	(안)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u>10명 이상 17명 이내</u>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범위 명시

- 4)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원안동의
- 6)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어린이 친화도시”란”을 ““아동친화도시”란”으로, “어린이”를 각각 “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어린이가”를 “아동이”로, “어린이 친화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어린이”를 “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항 중 “어린이 친화도시”를 각각 “아동친화도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어린이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을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 친화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어린이는”을 “아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린이”를 각각 “아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어린이는”을 “아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린이는”을 “아동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어린이를 고려한 공공이용시설)”을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어린이”를 각각 “아동”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을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린이가”를 “아동이”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어린이”를 “아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어린이”를 “아동”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어린이 건강증진)”을 “(아동 건강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어린이가”를 “아동이”로, “어린이”를 각각 “아동”으로 한다.

제9조 중 “어린이 친화도시”를 각각 “아동친화도시”로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중 “어린이 친화도시”를 각각 “아동친화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어린이친화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어린이 친화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문화복지국장”을 “아동친화도시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어린이 친화도시”를 “아동친화도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어린이 친화도시 업무담당 과장”을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 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 꿈과 희망을 마음 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 ----- -----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어린이 친화도시”란 모든 면 에서 어린이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어린 이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1. “아동친화도시”란----- ----- 아동----- ----- 아동----- -----.
2.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의 아동 중, 특히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아동”란 「아동복지법」 제3 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건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아동이-----

<p>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 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p> <p>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 장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 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p> <p>1. 어린이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2. 어린이 친화도시에 관한 주 요시책</p> <p>3.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친 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구청장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시 서울특별시 성북구민들 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 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p> <p>제5조(어린이 친화도시의 조성 기 준) 구청장은 어린이 친화도시 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p>	<p style="text-align: right;">아동</p> <p>친화도시----- -----.</p> <p>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 아동친화도시 ----- ----- -----.</p> <p>② ----- ----- -----.</p> <p>1. 아동친화도시----- -----</p> <p>2. 아동친화도시----- -----</p> <p>3. ----- 아동친화 도시----- -----</p> <p>③ ----- 아동친화도시----- ----- -----.</p> <p>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 아동친화도시----- ----- -----</p>
--	---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어린이는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어린이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어린이는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어린이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어린이를 고려한 공공이용 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행 편의
2. 어린이의 안전성 검토
3. ~ 5. (생략)

제7조(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

1. ----- 아동은-----
-----.
2. 아동-----
----- 아동-----
-----.
3. 아동은-----
-----.
4. 아동은-----

-----.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 시설) -----

-----.

1. 아동-----
2. 아동-----
3. ~ 5. (현행과 같음)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
----- 아동이-----

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어린이 건강증진) 구청장은 어린이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한다.

1.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

--.

1. 아동-----
2. 아동-----

제8조(아동 건강증진) -----
- 아동이-----
----- 아
동-----
-----.

제9조(위원회 설치) -----
아동친화도시-----

----- 아동친화도시-----
-----.

제10조(기능) -----

--.

1. 아동친화도시-----
2. 아동친화도시-----
3. 아동친화도시-----

<p>급 등에 관한 사항</p> <p>4. <u>어린이 친화도시</u>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p> <p>5. (생략)</p> <p>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u>15명 이내</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 및 다양한 계층·지역 또는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u>구청장이 위촉</u>하고, 당연직 위원은 <u>교육문화복지국장</u>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14조(회의)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u>어린이 친화도시</u>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p>	<p>-----</p> <p>4. <u>아동친화도시</u>-----</p> <p>-----</p> <p>5. (현행과 같음)</p> <p>제11조(구성) ① -----</p> <p>-----</p> <p><u>10명 이상 17명 이내</u>-----</p> <p>- .</p> <p>② -----</p> <p>-----</p> <p>-----</p> <p>----- <u>아동친화도시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 <u>아동친화도시</u>-----</p> <p>-----</p> <p>- .</p> <p>제16조(간사) ① -----</p> <p>-----</p>
--	--

<p>간사는 <u>어린이 친화도시</u>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p> <p>② (생략)</p>	<p>----- <u>아동친화도시</u> 업무담당 부서장-----.</p> <p>② (현행과 같음)</p>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어린이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시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나 조례개정으로 추가 발생 되는 비용은 없으며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은 2015년 예산에 편성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2항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의 정의에 따른 용어변경, 연령 등 개정

4. 작성자

교육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